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2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서삼석 · 김 윤
이성윤 · 서미화 · 박용갑
문금주 · 박 정 · 김승원
문대림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·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,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을 제정하는 데 있어 현행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어획실적 등의 자료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에 따라 구축되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법을 위반하여 어

확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폐지함으로써 동일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,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각각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(안 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67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각각 “「양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제112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12조제4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	제96조(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)
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①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 관리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 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 는 사항의 심의	7. ----- ----- 「양 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----- -----
② 시·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 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·도수산 조정위원회가 시·군·구수산 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 다.	②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이 법, 「수산자원 관리법」, 「어장관리법」, 「양식산업발전법」 및 「연 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 는 사항의 심의	8. ----- ----- 「양 식산업발전법」, 「연근해어 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및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-----

③ ~ ⑤ (생 략)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① (생 략)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·어획실적·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 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10. (생 략) 11.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⑤ (생 략)	----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04조(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. ③ (현행과 같음) 제112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